

인천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57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576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가소8548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0. 7. 15.

판결 선고 2020. 9. 9.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가소8548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년 7월경 원고로부터 D 공사 신축공사 중 철골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4.부터 2017. 9. 29.까지 C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17년 9월 중순경 원고로부터 도급계약서 작성 요청을 받자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C은 2017년 10월 초순경 원고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하자, 피고의 동의 없이 "작성일자: 2017. 9. 30., D 현장 설치공사, 공급가액: 6,000만 원, 세액: 6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이라고 기재한 뒤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14. C이 지정한 피고 명의의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7. 10. 14. 200만 원, 2017. 10. 16. 180만 원, 2017. 10. 25. 200만 원, 합계 58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 명의로 위조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6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서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고가 2017. 10. 14. 피고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7년 7월경 C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2017년 9월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C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C은 피고 명의를 위조하여 피고와 C을 공동 하수급인으로 한 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서 특기사항 제3항에는 공사대금 수령인은 공동계약자인 C이 수령하고, 공동계약자인 피고는 공사금액을 원고에게 지급요청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시점, 공사대금의 지급내역,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작성 시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와 C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로서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이나 진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6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C이 노무비 및 식대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명의의 합계 6,6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그 세액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송금 경위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C과 원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6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C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600만 원을 C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C에게 58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는 C으로부터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C의 지시에 따라 58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 역시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600만 원을 보관하면서 위 돈을 C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C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6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C의 부탁을 받은 피고는 위 600만 원을 수령한 후 C의 지시에 따라 그 중 580만 원을

재차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결국 원고로서는 C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C과 체결한 약정에 근거하여 6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C이 발행한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조건으로 송금한 것이고, 이후 세금계산서가 위조됨이 확인되어 원고가 세금 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계약상대방인 C에게 자신이 한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⑥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모르는 돈이 송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당일인 2017. 10. 14.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로서는 C의 부탁으로 원고로부터 600만 원이 입금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후 C과의 약정에 따라 58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으므로, 모르는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재환

판사송한도

판사박정미